

교직원 명예·희망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직원의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예·희망퇴직 신청자격) ① 명예퇴직 신청자는 본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은 자로 한다. 단, 대학구조조정으로 학과(전공)의 폐지와 소속 학과(전공)와의 전공이 불일치한 교원은 예외적으로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총장은 대학운영에 필요하다면 20년 미만 근속 교직원중 자진하여 희망퇴직을 희망하는 교직원에게 명예퇴직자에 준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<개정 2018.2.22>

② 명예퇴직 신청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.

1.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
2.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로 수사 중인 자
3.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 상태가 된 자(단 공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)

제3조(근속기간의 산정) 명예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은 본교 교직원으로 임용발령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하는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 수로 한다.

제4조(명예퇴직 수당지급 공고) ① 총장은 매년 1회씩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 및 인원, 지급신청기간, 지급방법, 지급일, 그 밖에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기간 개시일 10일 전까지 각 부서에 통보(공고)해야 한다.

② 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인사관리방침 및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5조(명예퇴직신청)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교직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[별지 제1호]에 교직원명예퇴직원[별지 제2호]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제6조(명예퇴직 심사위원회) ①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명예퇴직심사위원회(이하 "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사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 또는 직원인사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.

③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명예퇴직자 결정)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우선 고려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한다.

1. 공상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교직원
2. 잔여 근무기간이 짧은 교직원
3. 장기근속 교직원
4. 상위직 교직원

② 명예퇴직대상자의 결정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사장에게 제청하여 확정된 자로 한다.

제8조(명예퇴직수당) 수당 지급액은 [별표1]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.

제9조(명예퇴직수당 지급통지) 수당지급 대상자로 최종 결정되면 결정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에 따른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0조(명예퇴직수당 수령권자) ① 수당의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수당지급 수령권은 상속법에 의한 유족이 계승한다.

2-20-2-3 교직원 명예·희망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

부 칙(제정 2015. 1. 13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2. 22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수당지급액 산출표

정년 잔여기간 구분	산정기준
1년 이상~5년 이내인 자	퇴직신청일 기본연봉 월액의 50%×정년잔여월수 = 수당지급액
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	퇴직신청일 기본연봉 월액의 50%×[60월+(정년잔여월수-60월)/2] = 수당지급액
10년 초과자	퇴직예정일 기본연봉 월액의 50% × 90개월 = 수당지급액 (정년 잔여기간은 최대 10년까지만 인정, 10년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)

※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 정년 잔여기간 산정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, 잔여일이 15일 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.

[별지 제1호]

교직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

소 속		직 명 (급)	
성 명		생 년 월 일	년 월 일
주 소			
명 예 퇴 직 예 정 일		정 년 예 정 일	
근 속 년 수		정 년 잔 여 기 간	년 개월
산 출 내 역			
수 당 신 청 액		인사담당확인	(인)

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 정관 제45조의2 및 교직원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붙임 : 교육원명예퇴직원 1부.

신청인 : (인)

위와 같이 명예퇴직자로 제청합니다.

예원예술대학교 총장(직인)

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 이사장 귀하

